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1. 12.



박정환 의원

# 제 안 설명서

제 안 자: 박정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약칭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필요시에는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7조의2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 조례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213
----------	----------

발의일자: 2021. 11. 25.

발의자: 박정환,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약칭 등 용어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 나.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56조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라.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5조 등)

##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1) 「지방자치법」
  -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사하기”를 “심사 · 처리하기”로, “의결로써”를 “의결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제1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 · 자격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

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 ----- ----- -----.</p>
<p>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u>총선거후</u>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 까지 재임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 ----- <u>전국동시지방선거후</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u>심사하기</u> 위</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 ----- -----. ----- <u>심사·처리하</u></p>

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신 설>

#### ② (생 약)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생 약)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기 -----  
의결로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

둔다.

<신 설>

② (생 략)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의회는 의원의 겹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  
-----  
----- 제7조제5항  
-----  
-----.

## 【 현행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7. 12. 28)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6. 30, 1998. 10. 21, 2002. 7. 2, 2004. 7. 9, 2006. 11. 10, 2007. 12. 28, 2012. 5. 1)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복지문화위원회 8명 이내
4. 경제도시위원회 8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6. 30, 1998. 10. 21, 1999. 12. 1, 2003. 4. 11, 2004. 7. 9, 2004. 8. 2, 2006. 7. 18, 2007. 4. 5, 2007. 12. 28, 2011. 5. 9, 2012. 5. 1, 2013. 7. 11, 2013. 12. 23, 2015. 7. 31, 2017. 10.23)

####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2. 기획 행정위원회

- 가. 청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삭제 2017. 12. 29)

#### 3. 복지문화위원회

-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경제도시위원회

- 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창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4. 7. 9, 2016. 10. 2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삭제(2011. 11. 1)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8.

3. 1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1. 11. 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11. 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 11. 1)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1. 10)